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공고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참고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선정규모** : 스타트업 24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6.5.26.(화) ~ 6.15.(월) 16:00까지

□ **지원내용** : 협력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1.4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4억원*) 지원

* 스타트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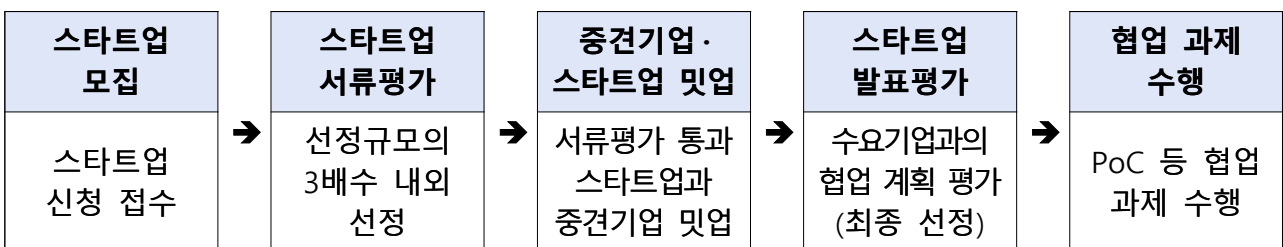
- (후속 연계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 연계·상생협력) 연계 지원

* 해당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지원금액	세부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1.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별도 안내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창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맞춤형 멘토링, 통합경진대회, R&D 컨설팅, 홍보 등 지원
수요기업 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협업 인프라 지원 및 참여 기회 부여 등
후속 연계 지원	최대 2억원 ~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연계 (최대 1.5년, 2억원) •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연계 (최대 2년, 6억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6. 8. ~ '27. 3 예정)

□ **추진절차**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과제 현황** : '26~'28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13개 전략분야 중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 필요 과제 24개

전략분야	수요기업	과제내용
AI	 대교에듀캠프	■ 3D 비전 AI 에이전트 기반 아동 발달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영유아 체육 브랜드 '트니트니' 수업 현장에 다각도 카메라 기반 3D 비전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아동 발달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학부모와 강사용 맞춤형 성장 리포트를 자동 생성
	 에스엘	■ 설계 업무 자동화 AI AGENT - 비정형 형태로 축적된 과거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자료를 구조화하고 검색에 용이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신규 설계 시 고장모드 및 리스크를 자동 탐지·추천하는 지능형 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 자동차 제조 도메인 특화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 검색·분석 플랫폼 구축 - 자동차 부품 제조 도메인에 특화된 멀티모달 데이터를 Kubernetes 기반 VectorDB 클러스터와 멀티모달 임베딩을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 간 의미 기반 검색 및 RAG 기반 지능형 응답 기능 구현 플랫폼 구축
	 에이치에스화성	■ 건설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 자동화 AI 에이전트 - 분산된 건설 운영 데이터를 도메인 온톨로지 기반 단일 데이터 레이어로 통합하고, EIS 대시보드와 AI 에이전트를 통해 경영진과 실무자의 의사결정 자동화
	 디펜스앤에어 로스페이스	■ 스마트 위치를 활용한 AI 기반 탄창 잔탄 모니터링 및 전술정보 UI 연동제어 기술개발 - 스마트 위치를 활용한 AI 기반 탄창 잔탄 모니터링 기술개발 - 스마트 위치를 활용한 전술정보 UI 연동제어 기술개발
	 한국 평가데이터	■ 데이터기반 CRM 서비스 - 데이터 기반 B2B 마케팅 대상군 자동 추천 ■ AI 기반 RPA를 활용한 수작업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 기업정보 공개중지·정보정정 요청 프로세스 자동화
	 한국플랫폼 서비스	■ AI 열화상 모니터링 서비스 - AI 열화상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소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풀무원	■ 식품 제조 공정의 품질예측·의사결정을 위한 AI Agent기반 Vertical AI 솔루션 개발 - 두부 제조 공정의 품질 예측 결과를 작업자 의사결정과 저위험 공정 변수 제어에 연결하는 Human-in-the-Loop Closed-loop 실증 - 두부 제조 공정을 First Domain Pack으로 한 품질예측·공정 의사결정 기술 개발, 풀무원 데이터·가중치 격리원칙하 타 도메인 확장 기반 마련
	 호림엑스이	■ HVS 플랫폼 특화 초경량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 AI 및 자연어 명령 처리 기술 개발 - 차량용 온디바이스에 AI 기반으로 자연어 음성인식 및 HVS 기능의 음성변환 처리 기술개발 수행 ■ 국산 NPU AI 엣지 기반 실시간 재난·교통 위험상황 공유 플랫폼 개발 - 국산 NPU 기반 AI Edge RSU(노변기지국)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 기술개발 수행

전략분야	수요기업	과제내용
로봇	 고아정공	■ 360도 영상수집 기반 원격시설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및 실증 - 제조·설비 현장에서 360도 영상수집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 시설·설비·작업환경을 통합 관찰하고, 이상상황 확인과 현장 기록 관리 효율화
	 대동	■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시 장애물 회피 선회 기동 -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시에 장애물 인지에 따라 장애물을 회피 선회 기동하고, 기존 작업 완료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장애물 처리 이후 기존 작업에서 연계한 연속 작업 가능하도록 기술 구현
	 아주스틸	■ AMR 기반 위험감지 안전 로봇 솔루션 실증 - 철강 제조현장의 실제 운영 문제를 AMR 기술로 해결, 위험구역에 대한 점검의 효율화와 이상징후 조기감지 등 무인 대응력 향상 목표
	 이수화학	■ 수직농장 재배대 세척 자동화 시스템 -엽채류 생산 재배 중 재배대에서 발생한 녹조 등으로 인한 생육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Bar 형태의 Gutter를 세척할 수 있는 Gutter 맞춤형 세척 시스템 개발 ■ 스마트팜 방재 및 작업 지원 자동화 시스템 - 스마트팜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와 방재 등 생산 외 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업무를 지원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재 및 작업 지원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푸드머스	■ 무인지게차(AGV) 활용한 단순 이송 무인화 및 물류환경 개선 실증 - 저부가가치 단순 반복 이송 구간 무인화, 이송 자동화 확산을 위한 현장 실증, 근로자 안전 중심의 작업환경 개선 실증
반도체 디스플레이	 AP시스템	■ 전압·전류 보상 기반 RTP 디지털 정밀 온도제어 기술 개발 - RTP Lamp 위상제어 시스템의 디지털 제어 구조 개발 및 실시간 전압·전류 보상 제어를 적용한 정밀 온도제어 기술 개발
	 에코프로 에이치엔	■ HBM용 공정 소재 개발 - 어드밴스패키징向 웨이퍼 연마용 공정 소재 개발
바이오·의료	 한국에자이	■ 고령자 인지기능 저하의 조기선별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조기에 선별하고 반복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치료 및 추가 인지증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유효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개발
첨단소재	 조광페인트	■ 가시광 활성 고기능성 소재 개발 - 가시광 활성 소재를 이용한 항바이러스 도료 또는 가시광 경화가 가능한 점·접착 소재 개발
기후·에너지	 아주	■ 전자재 분야 ESG·친환경 소재 및 공정 효율화 솔루션 - 원가 절감, 탄소 저감, 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 발굴
양자	 나이스평가정보	■ 금융권 여신 전략 고도화를 위한 스타트업 협업형 Rule-Set 최적화 솔루션 - 스타트업과 협력해 여신 전략의 Rule-Set 복잡·반복 검토·지표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 최적화 기술로 우수 전략을 도출해 검증 후 솔루션 도입·후속 PoC·금융기관 공동 제안을 진행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5.27.~'26.5.26.)**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3.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4.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5.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26. 5.26.(화) ~ 6.15.(월) 16: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 ③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붙임 1]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내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3배수 내외 선정)	스타트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통보
상시	6월 4주	7월 2주	7월 4주

※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밋업(Meet-Up)** : 발표평가 대상자와 수요기업과의 온·오프라인 1:1 밋업(Meet-Up)을 통한 협업 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구체화

* 수요기업과의 밋업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일정 등은 개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 과제 이해도, 신청 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스타트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 평가
 -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15분 + 질의응답)
 - ** 평가방법 :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최종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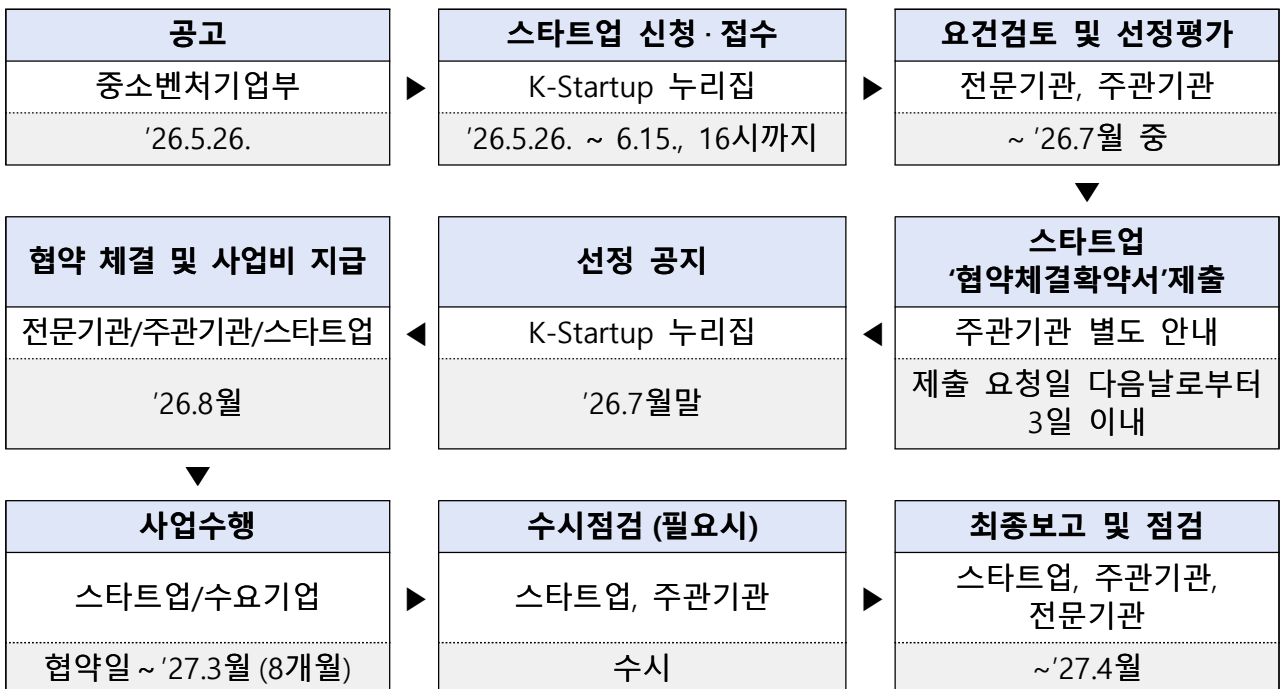
- 협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스타트업의 역량·전문성·실현가능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
협업 과제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요구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의 협업 과제 이해도 정도 * 발표평가 시, 수요기업 과제 출제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 예정 	30
팀(기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보유 기술·인력 등의 전문성, 관련 프로젝트(연구) 수행 경험 등 	25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및 기술·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등 	25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가능성 및 협업 과제 수행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검증 등 	20
비수도권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2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센터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수요기업별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 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 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수요기업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 사업 문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Tel) 053-359-3668
		(Tel) 053-759-8141

□ 시스템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붙임 1

사업계획서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계획서**

※ (표는 삭제 후 제출) 공고문 내 2. 협업 과제 개요를 참고하여 협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명 및 과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수정은 불가하며 수요기업명 또는 과제명이 상이할 경우 평가 및 선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과제	전략분야	AI	세부분야	AI 에이전트
	수요기업명	공고문(2. 협업 과제 개요)을 참고하여 수요기업명 기재		
	과제명	공고문(2. 협업 과제 개요)을 참고하여 과제명 기재		

일반 현황

과제명	(보유 혹은 개발 중인 기술·제품 서비스 개요)				
기업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명칭'과 동일하게 기입)	대표자명	000		
대표자 생년월일	0000.00.00.	대표자 유형	단독/공동/각자대표		
연락처	000-0000-0000	이메일			
개업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사업장 소재지	00도, 00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인력 구성(신청자 본인 제외 공동·각자대표 포함)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보유 역량(경력 및 학력 등)	구성 상태
1	000	공동대표	S/W 개발 총괄	컴퓨터공학과 교수 재직(0년)	완료
2	000	대리	000 개발	00학 전공, 000재직(0년)	예정(00.0)
3					
⋮					

※ (표는 삭제 후 제출) 본문 5page 내외, 11포인트로 작성 권장(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 (행 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과제 해결 방안(아이템 개요 등)

<p>명칭</p>	<p>※ (표는 삭제 후 제출) 제품·서비스 혹은 보유한 원천기술 명칭</p>
<p>소개</p>	<p>※ (표는 삭제 후 제출) 아이템 개요(용도, 사양 등), 기능·가치 등</p>
<p>과제 해결방안</p>	<p>※ (표는 삭제 후 제출) 주제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발 계획</p>
<p>기술 경쟁력</p>	<p>※ (표는 삭제 후 제출) 문제해결을 위한 자사의 기술력, 경쟁력 및 차별성·독창성·실용성 등 - 신청 과제 해결과 유사한 개발 이력 작성(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기재)</p>
<p>산출물 및 개발단계</p>	<p>※ (표는 삭제 후 제출) 협약기간 내 개발 예정인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및 현재 개발단계 등 * 개발단계 : 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출시 등</p>

<p>사업화 방안</p>	<p>※ (표는 삭제 후 제출) 협업을 통한 사업화 방안 신청 수요기업 외 추가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 제안하는 것도 가능</p>																
<p>기타 특·장점</p>	<p>※ (표는 삭제 후 제출)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 수상, 자격증, 투자유치, 자격 이력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수상 이력 등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대회명</th> <th style="width: 33%;">주최</th> <th style="width: 33%;">입상여부</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대회명	주최	입상여부												
대회명	주최	입상여부															
<p>이미지</p>	<p>※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p>	<p>※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p>															
	<p><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p>	<p><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p>															

협약기간 내
추진 계획

※ (표는 삭제 후 제출) 협약기간 내 협업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 목표 달성 추진 일정

< 사업 추진일정 >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수요기업과 산출물 단계 협의	00.00.00.~00.00.00.	00 기능 구현
서비스 초도계약 라이선스 계약		00 계약 체결
⋮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계획

※ (표는 삭제 후 제출) 사업비는 최대 1.4억원 이내로 작성
* 사업 운영 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료비	- 자재구입 (0개월 X 0000원)	3,448,000
		7,652,000
외주용역비		7,000,000
지급수수료	- 회계감사 수수료 550천원	550,000
.		-
.		
합 계		

붙임

기업 현황[요약]

※ (표는 삭제 후 제출) 본문 5page 내외, 11포인트로 작성 권장(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 (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기업명		대표자			
지원분야		수요기업			
창업일		연락처			
사업장 주소					
사업분야 (주요 생산품)					
기업 및 제품서비스 특징	(기업 주요내용, 제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요약하여 기재)		 제품 및 서비스 사진		
사업수행 성과	사업수행 실적 * 대기업 협업, 프로젝트 진행 등	대·중견기업 등 협업 성과			
		협업 경험 여부	Y/N	횟수	3
		주요 협업 형태 * 중복 선택 가능	▣ 공동기술 개발 ▣ 실증(PoC) ▣ 납품·계약 ▣ 투자 ▣ 기타		
		'24.3.6	(협업 및 사업화 진행성과(MOU 등))		
		'25.12.5	(협업 및 사업화 진행성과(MOU 등))		
	기타 성과	'23.8.16	(투자유치 진행 여부,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경진대회 수상, 특허, M&A 등 성과 기재)		
		'24.12.22	(투자유치 진행 여부,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경진대회 수상, 특허, M&A 등 성과 기재)		
	정량적 성과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억원)			
고용인원(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 증빙(스캔하여 첨부)

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사업자 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비목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시 재 안내 예정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비 집행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여비	• 창업기업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 3**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개방형 혁신 사업 목록**

연번	개방형 혁신 사업명
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민간선별 추천형
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상호 자율탐색형
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챌린지(공고 예정)
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규제자유특구 특화(공고 예정)
7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창업허브 특화(공고 예정)
8	AI+ OpenData 챌린지
9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10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 X)
11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LLM 분야
12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 분야
13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플랫폼
1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펍리스 챌린지
15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로봇
16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뷰티 챌린지
17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링크업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
18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이노웨이브
19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공고 예정)
20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공고 예정)

* 예정 공고의 경우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붙임 5

2026년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 지원 내용

※ '26년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AI 스타트업 선정기업 대상 지원 내용이나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국징법 §13 ①)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국징령 §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국징법 §105 ①)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 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